

서울특별시영등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審査報告書

1994. 3. 16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 1994年 3月 3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 1994年 3月 4日 回附
- 다. 上程日字 : 第23回 永登浦區議會(臨時會)第1次 委員會(1994年 3月 16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財務局長 朴忠會)

가. 提案理由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구세 조례 개정

나. 主要骨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姜性熙)

條例 第2條의 規定에 依한 課稅 對象에 第2基 地下鐵 運營을 위하여 設立된 서울特別市鐵道公社를 追加하기 위하여 地方稅法 第9條의 規定에 依據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1994. 2. 26 市長이 示達한 同 條例 改正(案)에 따라 改正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要請案대로 改正함이 可하다고 思料됨.

4. 審査結果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0
----------	-----

제출년월일 : 1994년 3월 3일
제 출 자 : 영 등 포 구 청 장

1. 제안이유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구세 조례 개정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감면조례 22-4

4. 예산조치

별도예산 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구세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과세면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 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과세면제)
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1.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2.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3.
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4.
(신 설)		5.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